#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00

발의연월일: 2024. 8. 26.

발 의 자: 백승아·최기상·김문수

양부남 • 이기헌 • 정준호

박해철・조 국・이재강

김준혁 · 송옥주 · 김성환

이수진 · 이소영 · 권향엽

오세희 • 박범계 • 김 현

허 영 • 윤종군 • 김용만

전진숙 · 염태영 · 황정아

박희승・김 윤・조계원

진선미 의원(2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귀농어· 귀촌지원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에 대 하여 특례를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귀농어·귀촌지원시설로 활 용하려는 경우나 5년 이상의 장기 미활용 폐교재산에 대하여 농업· 어업법인 등이 사용하려는 경우 등에는 무상 대부도 가능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편, 학령기 학업중단 학생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기준 5 만 2천여 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 위기학생부터 학교 밖 청소년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의 기회와 사회적 보호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 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률」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이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폐교재산의 무상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법률 제 호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이 적합하 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그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 교육감은 다음 각	5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3. 「초・중등교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		
	을 겪는 학생에 대한 위탁교		
	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		
	는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		
	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u>&lt;신 설&gt;</u>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		
	교육기관이 그 폐교재산을 교		
	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